

개 방 이 사 추 천 위 원 회 운 영 규 정

(제정 2008. 7. 28.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24조의 3에 의하여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자 도입된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사학의 건학이념 실현,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위원회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(이하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기능)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감사를 10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안수집사 이상의 신자로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추천위원회의 구성) ① 추천위원회는 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.

② 당해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11인으로 하되, 대학평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6인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으로 구성한다.

③ 제2항의 대학평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

2. 전주비전대학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

3. 전주영생고등학교, 온고을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각 1명

④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발생시 구성하며,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

제5조(추천위원회의 조직) ① 추천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의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
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제 3 장 임원 추천

제6조(개방임원 추천) ①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할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사 :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
2. 감사 : 단수 추천
- ③ 개방임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(재직임원은 임기만료 3월 전) 이내에 이사장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개방임원 추천을 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 의

제7조(회의 소집) ① 의장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의록 작성) 추천위원회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,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은 출석위원 중 3인을 의장이 지명하여 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의 공개) 의장은 본 회의결과를 교내 신문이나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